

모의고사 지문 분석

이감

부록

2023학년도 시준5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소버의 정의’에 따른 진화론의 시험 가능성 검토

지문 평가

(가)에서 ‘시험 가능성’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햄펠’과 ‘소버의 정의’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면, (나)에서는 그 개념을 구체적 사례인 진화론에 적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구성의 통합 지문인 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독해하면서 추론해야 하는 세부 내용들을 올바르게 파악했는지에 유의하자.

Keyword

(가) 인문 - 과학 철학 - 시험 가능성

시험 가능성, 햄펠의 정의, 가설, 보조 가설, 관찰 명제, 소버의 정의, 경쟁 가설

(나) 과학 - 생물학 - 진화론

포퍼, 진화론, 소버, 자연 선택론, 유전자 부동론, 공통 조상론

(가) 문단 1 현대의 과학 방법론

- 1) 현대의 과학 방법론은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들 중 과학적 방법만이 바른 것이라고 본 퍼스의 사상에 원천을 두고 있다. 그 방법론에 따르면 과학 탐구는 가설의 제안, 가설로부터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예측, 가설의 시험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 오늘날의 ‘과학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과학적 방법의 세 단계를 거쳐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① 가설의 제안 ②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예측 ③ 가설의 시험

- 2) 여기서 시험이란 직접 실험하거나 관찰하여 확인해 보는 것으로, 가설이 본래 **시험 가능성**을 가질 때에 행할 수 있다.

▶ 과학적 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가설의 시험’을 고려하면, 애초에 ‘시험 가능성’을 갖추지 않은 가설은 과학적 방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험할 수 없다’면 ‘과학적 방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 어떤 가설이 ‘시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즉 ‘시험 가능성’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 지문의 초점이 될 것이다.

(가) 문단 2 시험 가능성 - 햄펠의 정의

- 1) 과학 철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성공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 가설을 수용 또는 폐기하는 과학 방법론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다만 비정상적인 유사 과학에 대응하여 이 방법론이 더 빛을 발하려면 시험 가능성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유사 과학과 같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려면 과학적 방법과 비과학적 방법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시험 가능성’은 과학적 방법의 핵심 개념인 것이다.

- 2) **‘햄펠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가설이 시험 가능하다는 것은, 그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관찰 명제**가 도출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모든 구리는 전도체이다.’라는 가설과 ‘이 금속은 구리이다.’라는 보조 가설로부터 ‘이 금속은 전도체이다.’라는 관찰 명제가 도출되므로, 실제 이 금속에 전류를 흘려 보는 방법으로 [→ 관찰 명제의 참을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시험 가능하다는 것이다.

▶ ‘햄펠’이 정의한 ‘시험 가능성’은 상당히 원론적이다. 가설이 시험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 시험 가능한 명제인 ‘관찰 명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도출된 관찰 명제의 참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가설도 수용되는 셈이다.

가설 : 모든 구리는 전도체이다.

보조 가설 : 이 금속은 구리이다.

관찰 명제 : 이 금속은 전도체이다. ⇨ 실험 및 관찰 가능

(가) 문단 3 시험 가능성 - 소버의 정의

- 1) 그런데 햄펠의 정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다.’와 같은 확률적 가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소버의 정의’**는 시험의 두 특성에 주목하며 내려졌다. 첫째는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는 보통 필연적[→ 햄펠의 정의]이라기보다 **확률적**이라는 것이다.

▶ **맥락 짚기** ▶ ‘햄펠의 정의’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소버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확률적 가설’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자.

▶ 가설이 ‘확률적 가설’이라면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 어떤 관찰 명제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다.’라는 가설과 ‘이 동전은 정상적인 동전이고 이 동전을 10번 던진다.’라는 보조 가설로부터 ‘동전의 앞면이 5번 나온다.’라는 관찰 명제가 필연적으로 [→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가 없다.

▶ **참고** ▶ 여기서의 ‘도출’은 귀납적 추론으로서 이 관찰 명제가 참일 확률이 크다는 정도로 추론하는 것이다. 햄펠의 정의는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 관찰 명제가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다.

▶ ‘소버’는 이 지점을 파악해 햄펠의 정의와는 달리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아니라 확률적**이라고 본 것이다.

- 2) 둘째는 **진짜 시험되는 대상**은 ‘가설 자체’가 아니라 **경쟁 가설**들 중에 옳은 것을 찾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험이 대조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소버는 저금통에 동전이 홀수 개 있다는 가설과 짝수 개 있다는 가설처럼 두 가설이 경쟁하는 상황이어야 시험 가능성을 갖는다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햄펠의 정의’에서는 가설로부터 도출되는 관찰 명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가설이 시험된다. 반면 ‘소버의 정의’에서는 가설 자체가 아니라 ‘경쟁 가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가 시험의 대상이 된다. ‘햄펠의 정의’와 ‘소버의 정의’를 구분하여 이해해 보자.

	햄펠의 정의	소버의 정의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	필연적	확률적
시험되는 대상	하나의 가설	경쟁 가설들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

- 3) 그에 따르면 두 경쟁 가설인 가설1과 가설2가 시험 가능하다는 것은, 가설1이 참이고 정당화된 보조 가설이 도입된 경우에 관찰 명제가 참일 확률과, 가설2가 참이고 정당화된 보조 가설이 도입된 경우에 관찰 명제가 참일 확률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두 확률이 달라야 경쟁 가설 중 하나를 택하는 시험이 유의미하다.

▶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가 확률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다. 어떤 가설이 참일 경우에, 도출된 관찰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참이라는 의미이다.

➡ '소버'에 따르면 '시험'이란 경쟁 가설들[→ 가설1, 가설2]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 즉 가설1, 가설2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설1, 가설2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과정은 '가설1이 참일 때 관찰 명제가 참인 확률'과 '가설2가 참일 때 관찰 명제가 참인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L1) 문단 1 화재 제시

1) 포퍼는 **진화론**이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을 가지지만, 그것이 시험 가능성이 있는 가설 또는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반증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 '포퍼'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과학 이론이라고 여기는] 진화론은 그것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시험 가능성'이 없어서 과학적 방법으로 얻은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관련하여 **소버**는 시험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정의를 토대로 진화론 역시 시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은 (나)를 읽는 시점에서 (가)를 온전히 이해했음을 전제로 한다. 과연 진화론이 정말로 '시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에서 파악한 '소버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L1) 문단 2 진화론의 시험 가능성

1) 여러 가설들의 묶음인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은 종의 형질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자연 선택론**이다. 아울러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진화론자들은 자연선택 등의 우연한 사건에 의해 개체군의 특정 유전자 빈도에 불규칙한 변화가 생겨서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전자 부동론**도 함께 받아들인다.

➡ 진화론에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자연 선택론'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진화론에는 '유전자 부동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토대로 '시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보자.

2) 소버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설들이 아니라 그것이 특정 종의 특정 형질에 적용된 사례로서의 가설들이 시험 가능하다고 보았다.

➡ (나)의 초점이 좁혀지는 대목이다. 소버는 자연 선택론과 유전자 부동론 자체는 시험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이 둘을 특정 사례에 적용한 가설들이 시험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특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L1) 문단 3 특정 종의 특정 형질에 적용한 경쟁 가설

1) 그래서 소버는 "현재 곰의 털 길이는 자연 선택과 유전자 부동의 결과이다."라는 가설 H1과 "현재 곰의 털 길이는 유전자 부동의 결과이다."라는 가설 H2가 시험 가능한 경쟁 가설이라고 설정하였다.

➡ 소버는 '곰'이라는 '특정 종'의 '털 길이'라는 '특정 형질'에 대해 자연 선택론과 유전자 부동론을 적용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화론의 '시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2) 진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 완결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곰의 털 길이는 주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관찰 명제 E1과 '곰의 털 길이는 주변 온도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관찰 명제 E2를 떠올렸다고 해 보자.

➡ 지금까지 언급된 '가설'과 '관찰 명제'를 정리해 보자.

가설 H1 : 현재 곰의 털 길이는 자연 선택과 유전자 부동의 결과다.
가설 H2 : 현재 곰의 털 길이는 유전자 부동의 결과이다.
관찰 명제 E1 : 곰의 털 길이는 주변 온도에 반비례한다.
관찰 명제 E2 : 곰의 털 길이는 주변 온도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

3) 자연 선택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 과정이므로 약간의 불규칙한 변화가 포함되더라도, H1이 참인 경우에는 E1이 참일 확률이 E2가 참일 확률보다 더 클 것이다.

➡ H1이 참이라면, E1이 참일 확률이 E2가 참일 확률보다 크다.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가)의 문단3-4]. H1이 참이라면 그로부터 관찰 명제 E1이 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확률적'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반면 유전자 부동만 있는 경우는 불규칙한 양상만이 남아 온도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까우므로, H2가 참인 경우에는 E2가 참일 확률이 E1이 참일 확률보다 더 클 것이다.

➡ 반대로 H2가 참이라면 E2가 참일 확률이 E1이 참일 확률보다 크다.
 ➡ 그런데 소버는 '정당화된 보조 가설'이 도입된 경우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관찰 명제의 확률을 고려한다[(가)의 문단3-3]. 아직 보조 가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여기서 의식해야 한다.

5) 그러나 소버는 현재 진화의 과정이 실제로 끝났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조 가설조차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E1의 의미 있는 확률을 갖기 어렵다고 보았다. 곰의 조상이 지역마다 서로 달라서 털 길이마저 차이가 컸다면 H1이 참이더라도 E2가 참일 확률이 E1이 참일 확률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상대로 '정당화된 보조 가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 가설을 도입하지 않아 처음부터 지역마다 곰의 털 길이가 달랐다면 두 경쟁 가설 중 하나를 유의미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시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

(L1) 문단 4 정당화된 보조 가설 도입

1) 소버는 '곰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보조 가설을 도입하였다. **공통 조상론**은 경쟁 가설들과는 달리 포유동물의 태아가 어류처럼 아가미구멍을 갖고 있다는 증거 등에 의해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것이다.

➡ 어떤 '정당화된 보조 가설'이 도입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2) 소버는 곰이 공통 조상을 지닌다는 점[→ 보조 가설]과 H1로부터, 지역별로 각기 다른 온도에 따라 오랜 기간 곰의 털 길이 변화가 누적되어 왔을 것이므로,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현재 털 길이가 짧다는 관찰 명제[→ E1]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당화된 보조 가설인 '공통 조상론'과 H1은 E2보다 E1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반대로 '공통 조상론'과 H2는 E1보다 E2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다. H1이 H2보다 관찰 명제 E1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셈이다.

3) 만일 실제로 E1이 관찰되어 왔다면 확률적 판단에 의해 H2가 폐기되고 H1이 수용될 것이다.

➡ 이는 'H1이 참일 때 E1이 참일 확률'이 'H2가 참일 때 E1이 참일 확률'보다 크기 때문이다. E1이 관찰되어 왔을 때는 H2가 아니라 H1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주목** ▶ 이렇듯 '소버의 정의'에 따르면 '시험 가능성'은 대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H1이 참일 때 E1이 참일 확률'과 'H2가 참일 때 E1이 참일 확률'이 다른 경우에만 '시험 가능성'이 성립할 수 있다[(가)의 문단3-3].

보조 가설 + H1이 참	보조 가설 + H2가 참
E1이 참일 확률 > E2가 참일 확률	E1이 참일 확률 < E2가 참일 확률

⇓ 실제로 E1이 관찰되어 옴

H1 수용[→ H2 폐기]

<보기> 분석

<보기> 문단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는 가설 H3과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가설 H4와 관련하여 다음의 (ㄱ)과 (ㄴ)은 관찰 명제로 떠올려 본 것이고, (ㄷ)은 보조 가설의 후보이다.

(ㄱ)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폐암 발생 빈도가 더 높다.

(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사이에 폐암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다.

(ㄷ) 조사 대상인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흡연 여부 외에 모든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

➡ (나)의 문단3, 4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H3과 보조 가설이 참일 경우에 (ㄱ)이 참일 확률이 H4와 보조 가설이 참일 경우에 (ㄱ)이 참일 확률보다 클 것이고, 실제로 (ㄱ)이 관찰되어 왔다면 우리는 H3을 수용하고 H4를 폐기할 것이다.

보조 가설 + H3이 참	보조 가설 + H4가 참
(ㄱ)이 참일 확률 > (ㄴ)이 참일 확률	(ㄱ)이 참일 확률 < (ㄴ)이 참일 확률

∴ (ㄷ)이 정당화된 보조 가설로서 도입될 때에만 H3과 H4는 시험 가능할 것이다[(나)의 문단3-5]. 따라서 ㉞번 선지가 적절하다.

[10~13] 기술

RIP에 따른 네트워크 라우팅

지문 평가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을 의식한다면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것이다.

Keyword

기술 - 통신 기술 - 네트워크 라우팅

라우터, IP 주소, 패킷, 라우팅, 라우팅 테이블, 정적 라우팅, 동적 라우팅, 라우팅 프로토콜, RIP, 목표, 홉, 다음

문단 ①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

1) 네트워크는 다수의 컴퓨터들과 라우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띤다. **라우터**는 데이터를 중계하는 장치로, 컴퓨터와 라우터는 모두 각각을 식별할 수 있도록, ‘***.168.0.1’과 같이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 하나의 네트워크는 여러 컴퓨터와 라우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두 IP 주소를 갖는데, 각각의 IP 주소가 중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서로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2) 데이터는 출발지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 묶음인 **패킷**의 형태로 라우팅을 따라 전송된다. **라우팅**은 패킷에 적혀 있는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가 빠른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 데이터는 ‘패킷’의 단위로 출발지 컴퓨터에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전송된다. ‘라우팅’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IP 주소는 고유하므로].

➡ 다만 IP 주소만으로는 어느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참조하는 것이 어떻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② 라우팅과 라우팅 테이블

1) 라우팅은 라우터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토대로 수행된다. 이 테이블은 다른 라우터들과 컴퓨터들에 관한 정보를 적어 둔 표이다.

➡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라우터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갖는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해 두고 넘어가자.

2) 관리자가 라우팅 테이블에 직접 입력한 정보들이 사용되는 **정적 라우팅**은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지만 규모가 커서 변동이 잦은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이와 달리 **동적 라우팅**은 이웃한 라우터들 간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라우터가 추가되거나 연결이 바뀌는 등의 변화에 대비한다. 이와 같은 라우팅 시에 개별 정보들을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규칙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 두 가지 ‘라우팅’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입력에 의존하여 라우팅 테이블이 갱신되는 ‘정적 라우팅’보다는, 라우터를 스스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동적 라우팅’이 더 중요해 보인다.

	정적 라우팅	동적 라우팅
갱신 방법	관리자의 입력 [→수동]	이웃한 라우터들과 정보 교환[→자동]
반응 속도	빠름	다소 느림
규모가 큰 네트워크	부적합함	적합함
네트워크 변동	불리	유리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이 '동적 라우팅'의 원리로 좁혀지고 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 어떻게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가 갱신되는지, 이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독해를 이어가자.

문단 3 RIP의 라우팅 테이블 - 초기 상태

- 1) 대표적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로 **RIP(라우팅 정보 프로토콜)**가 있다. RIP를 따를 때 라우터들은 항상 이웃한 라우터들과 30초에 한 번씩 정보를 교환한다.

➡ 대표적인 방식인 'RIP'에 따르면 라우터들은 이웃한 라우터들과 30초마다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교환되는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것이다.

- 2) 라우팅 테이블은 '목표', '홉', '다음'의 3열로 이루어져 있다. **['목표']**에는 목적지의 IP 주소가, **['홉']**에는 해당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할 라우터의 개수가 담긴다. **['다음']**에는 해당 경로에서 패킷이 바로 다음에 도달할 장치의 IP 주소가 담긴다.

➡ 라우팅 테이블에 '다른 라우터들과 컴퓨터들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목표', '홉',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자.

목표	홉	다음
목적지의 IP 주소	목적지 도달까지 거쳐야 할 라우터 개수	바로 다음에 도달할 장치의 IP 주소

- 3) 편의상 컴퓨터1, 라우터1, 라우터2, 컴퓨터2가 순서대로 일직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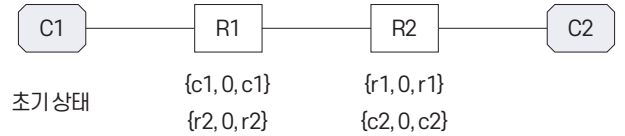
맥락 짚기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가 주어진 만큼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 네 번째 <보기> 문제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 컴퓨터는 C1, C2로, 라우터는 R1, R2로, 각각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c1, c2, r1, r2로 표기하자.

- 4) {목표, 홉, 다음}의 형태로 정보를 표현할 때, 라우터1의 초기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웃한 장치들에 관한 정보인 {컴퓨터1의 IP 주소, 0, 컴퓨터1의 IP 주소}와 {라우터2의 IP 주소, 0, 라우터2의 IP 주소}가 적혀 있다. {컴퓨터1의 IP 주소, 0, 컴퓨터1의 IP 주소}는 컴퓨터1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이 라우터1에 도달했을 때 다른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홉'이 '0'이고, '다음'이 '컴퓨터1의 IP 주소'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라우터2의 초기 라우팅 테이블에는 {라우터1의 IP 주소, 0, 라우터1의 IP 주소}와 {컴퓨터2의 IP 주소, 0, 컴퓨터2의 IP 주소}가 적혀 있다.

➡ 먼저 아직 아무 정보도 교환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R1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그것과 이웃한 C1, R2에 대한 정보가, R2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웃한 C2, R1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 이때 C1, C2는 라우터가 아니므로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문단 2~1].



주목 ▲ '홉'은 '목표'까지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 기록되는 '이웃한 장치에 대한 정보'에서 홉은 전부 0이다. 이웃해 있으므로 어떤 라우터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단 4 RIP의 라우팅 테이블 - 정보 교환 시

- 1) 초기 상태에서 30초 후에 이웃한 라우터들 간에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는 첫 번째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받은 정보에서 '목표'가 자신인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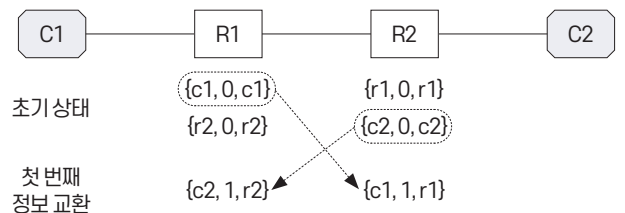
➡ 정보 교환이 일어날 때 '목표'가 자신인 정보를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R2는 '자신에 대한 정보'인 {r2, 0, r2}는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하지 않은 채 '컴퓨터1에 대한 정보'만을 추가하는 것이다.

- 2) 예컨대 라우터2는 라우터1로부터 정보를 받아 컴퓨터1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데, 이는 목적지가 컴퓨터1인 패킷이 라우터2에 도달했을 때에 참조할 정보로, '홉'은 1 증가한 '1'이 되고 '다음'은 '라우터1의 IP 주소'인 {컴퓨터1의 IP 주소, 1, 라우터1의 IP 주소}이다. 라우터1 역시 라우터2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2의 IP 주소, 1, 라우터2의 IP 주소}를 추가할 것이다.

➡ 나아가 R2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컴퓨터1에 대한 정보'가 {c1, 0, c1} 그대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홉'은 1만큼 증가하고[→ '목표'인 C1까지 R2에서는 라우터를 1개 거쳐야 하므로], '다음'은 해당 정보를 얻은 'r1'로 바뀐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다음으로 거쳐야 하는 라우터이므로].

주목 ▲ 이때 추가된 정보가 '목적지가 컴퓨터1인 패킷이 라우터2에 도달했을 때에 참조할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자. 해당 정보를 참조하면 바로 다음으로 R1로 향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RIP의 목적과 부합한다.

➡ 마찬가지로 R1의 정보도 업데이트되어서 '첫 번째 정보 교환'이 완료된 라우팅 테이블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3) 정보 교환이 더 이루어지면 자신을 제외한 네트워크의 모든 라우터와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각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되어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되며,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유지될 것이다.

➡ 지문의 예시는 '첫 번째 정보 교환'만으로도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된다. 해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C1, C2 중 어디로든 '완성된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를 참조하면 패킷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라우팅 테이블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R1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목표'가 c1, r2, c2인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 다만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다음 정보 교환이 진행될 때[→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지 않아도 정보 교환은 '항상' 30초마다 이루어진다.] 변경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각 라우팅 테이블에 전부 반영될 때까지 라우팅 테이블의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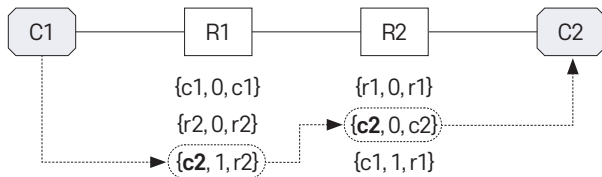
문단 5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한 패킷의 전송

1)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된 후, 컴퓨터2로 향하는 패킷이 라우터1에 도달했다면, 컴퓨터2가 목적지인 패킷은 라우터2에 전송하라는 정보에 따라 해당 패킷은 라우터2에 전송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패킷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맥락 짚기 ▶ 문단4까지가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문단5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패킷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물론 완성된 라우팅 테이블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 패킷에는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적혀 있다[문단1~2]. 즉 C1이 출발점이고 C2가 목적지인 패킷에는 c2가 적혀 있다. C1에서 출발한 패킷은 그것과 연결된 R1로 전달된다. 의도한 대로 패킷이 전송되려면 다음으로 R2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어서 R2에서는 C2로 패킷이 전달되어야 한다.

▶ 이 경로를 거치려면 R1에서는 {c2, 1, r2}를 참조하고, R2에서는 {c2, 0, c2}를 참조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킷에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만 적혀 있어도 패킷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목표'만 알고 있으면 해당 라우터에서 바로 다음에 패킷을 어디로 전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 이에 비해 훨씬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에 '목표'는 동일하지만 '홉'과 '다음'이 다른 정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때 각 라우터는 RIP에 따라 최적의 경로에 기여하기 위해 '홉'이 가장 작은 정보에서의 '다음'에 따라 패킷을 전달한다.

▶ 지문은 단순화된 사례를 통해 RIP을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와 라우터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지 컴퓨터인 C2를 향하는 [→ '목표'가 c2인] 정보들이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여럿 존재할 수 있다.

▶ 이때 '홉'을 활용하게 된다. '홉'이 적을수록 목적지 컴퓨터까지 가는 데 더 적은 수의 라우터를 거치므로 최적의 경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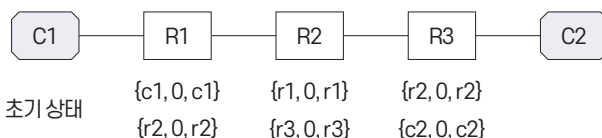
<보기>문단

다음은 두 컴퓨터 C1, C2 사이에 라우터 R1, R2, R3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림이다. 이 네트워크는 RIP를 따르며, C1, C2, R1, R2, R3의 IP 주소는 각각 간단히 c1, c2, r1, r2, r3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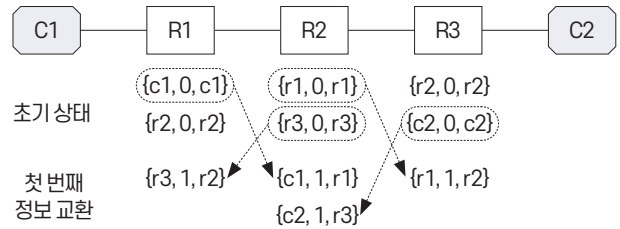


맥락 짚기 ▶ 지문에서 살핀 예시보다 라우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정보 교환이 일어날 때마다 라우팅 테이블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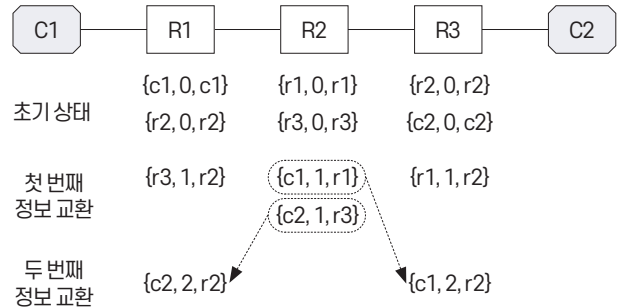
▶ 우선 초기 상태에는 각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에 이웃한 장치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 초기 상태에서 30초 후에 첫 번째 정보 교환을 거치면……



▶ 지문에서는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되어야 하는데[문단4~3], 가령 R1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C2에 대한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번째 정보 교환'이 필요하고, 이때 비로소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된다.



∴ 두 번째 정보 교환을 거쳐 완성된 라우팅 테이블에서, C2에서 출발하여 C1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의 경우 '목표'가 C1인 정보들을 참조하게 된다. 즉 R3에서는 {c1, 2, r2}를, R2에서는 {c1, 1, r1}을, 마지막으로 R1에서는 {c1, 0, c1}을 참조하게 된다. 따라서 ⑥번 선지가 적절하다.

손해 보험 계약과 중복 보험

지문 평가

손해 보험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다가, 그중 중복 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전형적인 법학 지문이다. 각 법적 개념의 요건이 무엇인지, 각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

사회 - 법학 - 중복 보험

손해 보험 계약, 피보험 이익, 이득 금지의 원칙, 중복 보험, 연대비례보상주의, 타보험주의,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문단 ① 손해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

- 1) **손해 보험 계약**은 우연한 보험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을 위해 보험 회사인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간에 체결된다.

▶ '손해 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간의 계약이다.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자[→ 보험 회사]는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손실을 보상받는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보험 계약자'라면, 해당 보험 계약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주체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이다. 이 둘이 구분됨을 파악해야 한다.

- 2)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피보험 이익이란 집, 자동차 등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이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해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다.

맥락 짚기 ▶ 손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법학 지문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재화[→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에 대한 손해 보험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 사고], 그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손해 배상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은 해당 자동차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다.

- 3) 방법은 **피보험 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보험의 목적과 구별**하고 있다.

▶ '보험의 목적'인 재화와 '보험 계약의 목적'인 피보험 이익이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 보험의 목적: 재화 그 자체
- 보험 계약의 목적: 재화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피보험 이익]

- 4) 보험으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금의 최대한도인 '보험 금액'**은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인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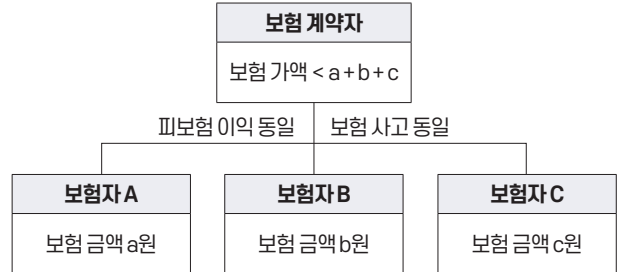
▶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어디까지나 손실 보상을 위함이지, 그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실을 넘어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험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 가액[→ 피보험 이익] ≥ 보험 금액[→ 보험금 최대한도]

문단 ② 중복 보험과 연대비례보상주의

- 1)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은 물론이고 보험 사고까지 모두 동일한 것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 보험**이라 한다.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이 일반적인 보험에서 '중복 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좁혀지고 있다.



▶ '중복 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여러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이득 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문단 1~4].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다.

- 2) 중복 보험이지만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계약자**라면, 보상은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를 합한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 내에서 연대 책임[→ 연대책임주의]을 지되,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 비례보상주의]에 따르는 것이다.

▶ 각각의 보험 금액대로 보상 책임이 발생하면 '이익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 법학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일상에서의 용례와는 매우 다르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악의'란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보험 가액이 1억 원인 재화에 대해 보험자 갑과 1억 원, 보험자 을과 5천만 원을 각각 보험 금액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자. 보험 사고로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대비례보상주의에 따라 갑은 6천만 원, 을은 3천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진다.

▶ 앞선 논의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 예시다.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5천만 원 초과하는 '중복 보험' 상황이다.

▶ 이때 [보험 계약자가 '선의의 계약자'라고 전제하고]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르면 보험 사고로 인한 손실 9천만 원에 대해 갑과 을은 각자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책임진다. 갑과 을의 보험 금액 비율은 2:1이므로 각자 6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보상하면 된다.

주목 ▶ 갑과 을은 보험 가액 1억 원에 대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실인 9천만 원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문단 1~4].

- 4) 피보험자는 중복 보험에서 **일부 보험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와 공모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피보험자가 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9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한도의 보상 책임을 지면 된다.

- ▶ 피보험자가 보험자 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을로부터는 손실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갑이 9천만 원의 손실을 혼자 보상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 그렇지 않고 갑이 9천만 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약의를 갖고 갑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문단 3 타보험주의에 따른 계약

- 연대비례보상주의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어서 각 보험자는 약관이나 보험 계약에 연대 책임이나 비례 보상과는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고, 이는 다른 보험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 ▶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연대비례보상주의는 상법에 규정되었으나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즉 손해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보험자들의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 다만 '이익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손해 보험이 유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 예컨대 갑은 타보험주의에 따라, 다른 보험자들이 보험 금액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잔액이 있을 때에만 보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 ▶ 가령 보험자 갑이 '타보험주의'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손해 보험 계약에 포함시킨다면 갑은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 그렇다면 문단2-3의 예시에서 먼저 보험자 을은 자신의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즉 5천만 원의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갑은 그 후에 남은 4천만 원의 보상 책임만 지면 되므로 연대비례보상주의와 비교했을 때 2천만 원 이익이다.
 - ▶ **맥락 짚기** ▲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새로운 예시를 만들기보다 앞서 나왔던 예시를 적용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인 독해이다.
- 그런데 모든 보험자가 타보험주의를 채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서로 미루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 우리 법원은 이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모든 보험자가 타보험주의에 따른 이득을 누리려 한다면 손해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막고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문단 4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

- 한편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체결한 중복 보험을 사기(詐欺)로 인한 중복 보험이라고 한다.
 - ▶ 앞선 문단2, 3이 '선의의 계약자'를 전제로 했다면, 문단4는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익 금지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악의의 계약자'를 다룬다.
- 이때에는 계약들이 모두 무효가 되므로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각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이때 각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인지한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시점은 보험자마다 다를 것이다.]
-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다수 계약의 사실을 해당 보험자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이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우리 법원은 이 의무의 위반이 보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원인

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 성립한다고 본다.

- ▶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 보험 계약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꾀하였을 때에만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라고 본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X는 보험 가액이 9천만 원인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 보험자 A와 6천만 원, 보험자 B와 3천만 원, 보험자 C와 1천만 원을 각각 보험 금액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 보험을 체결하였다.
 - ▶ X는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다. 보험자 A, B, C의 보험 금액을 합하면 1억 원으로, 보험 가액 9천만 원을 초과하는 만큼 이는 '중복 보험'에 해당한다[문단2-1)].
- 이후 보험 사고로 인해 해당 물건이 파손되어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복 보험의 경우, B와 C는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고 한다.
 - ▶ 우선 X가 선의의 계약자라는 가정하에서 판단하자[→ 이것이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라면 애초에 무효인 만큼 보상 책임의 금액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다].
 - ▶ B, C는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A의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A가 타보험주의에 따르는지[→ 손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전제하에], 연대비례보상주의에 따르는지에 따라 A, B, C의 보상 책임은 달라진다.
 - ▶ A가 '타보험주의'를 따른다면, B와 C는 발생한 손실 5천만 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 그렇다면 B는 보험 금액인 3천만 원, C는 보험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A는 잔액인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진다.

보험자	보상 책임	
A	1천만 원	잔액
B	3천만 원	보험 금액 내에서 책임
C	1천만 원	

∴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설령 X가 보험자 A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이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B는 여전히 3천만 원 한도의 보상 책임을 진다. 이는 지문의 예시에서 을이 3천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갑은 9천만 원이 아니라 여전히 6천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문단2-4)].

- ▶ A가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면, A, B, C는 보험 금액의 비율인 6:3:1에 따라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문단2-2)].

보험자	보상 책임	
A	3천만 원	손실의 60%
B	1천 5백만 원	손실의 30%
C	5백만 원	손실의 10%

(나) 「금루사」

- 민우룡 -

수록 지문 평가

작가가 실제로 인연을 맺은 애월이라는 기생을 향한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애정 가사이다. 다양한 비유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애월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점이나 사랑의 감정을 과감하고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또한 전생애 선계의 인물이었던 남녀 주인공이 죄를 지어 지상에 유배 왔다는 적당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참고 ▼ 18세기 말에 향촌 사족인 민우룡은 제주 통판으로 부임하는 사람을 따라 제주에 갔다가 애월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된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인 것이다.

어와 저 낭자(娘子)야 내 말씀 들어 보소

▶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속세에 묻혔은들 전생(前生) 인연 잊을쏘나

▶ '전생 인연'을 거론한 것은 현생의 만남이 지닌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낙포 선녀(洛浦仙女) 보려 하면 전생의 너 아닌가

▶ 낭자의 전생이 '낙포 선녀'였다는 말은, 낭자를 최고로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참고 ▼ '낙포 선녀'는 낙수(洛水)의 여신인 복비(宓妃)를 가리키는데, 중국 전설 속 임금인 복희씨의 딸로 낙수에 빠져 수신(水神)이 되었다고 한다.

남관(南關, 작가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을 이름)의 백면서생(白面書生,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선객(仙客)인 줄 뉘 알리오

▶ 남관 출신으로 '백면서생'인 화자 자신이 '선객'이라는 말인데, 결국 낭자와 화자가 모두 전생애 천상계의 존재였다는 뜻이다.

요지연(瑤池宴, 신선 세계의 복숭아가 맺힐 때 열린다는 천상계의 연회)의 복숭아 훔친 이는 너이건만

주고받음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 낭자와 화자가 선계에서 죄를 짓고 속세에 귀양 온 선녀와 신선이라는 말이다. 이는 두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인연이므로 현세에서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맺어져야 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넓디넓은 천하에 두 사람이 나뉘지니

벽해수(碧海, 짙푸른 바다의 물) 양양(= 바다가 한없이 넓음)하여 은하수가 되어 있다

▶ 현세에서는 각자의 출신지가 달라서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낭자는 제주에, 화자는 육지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마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하는 사정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너도 나를 보려 하면 험한 산이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영주산(瀛洲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의 하나로, 한라산의 별칭)이 아득하다

▶ 서로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 깨나 원하더니

옥황(玉皇)이 감동한지 선관(仙官)이 두둔한지

▶ '옥황'과 '선관'을 거론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태을선(太乙仙, 천신인 태을진인)의 연잎 배에 바람 돛을 높이 달아

자라 수염에 배를 매고 영주산에 들어오니

▶ 자신이 탄 배를 '연잎 배'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제주도에 이르는 과정 또한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仙界)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계의 경치'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하고 낭자와의 첫 만남을 '좋은 인연'이라고 말한다.

부용안 유엽미(芙蓉顏柳葉眉, 연꽃 같은 얼굴과 버들잎 같은 눈썹)는 전생과 한가지(=마찬가지)요

▶ '부용안'과 '유엽미'의 비유에 더해, '전생과 한가지'라는 표현을 써서 낭자를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그리고 있다.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네

▶ 낭자가 속세에 있어도, 속세를 벗어난 듯이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정원루(定遠樓, 제주 읍성의 누각) 밝은 달에 월모사(月姥絲, 전설 속 월하노인이 남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실)를 자아내어

▶ 월하노인이 화자 자신과 낭자 사이를 '월모사'라는 실로 이어 주었다고 상상하면서 운명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는 한편, 둘의 만남이 하늘이 정해 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피꼬리 제비 우는 봄날 초대 운우(楚臺雲雨, 초나라 화왕이 무산신녀와 사랑을 나누는 일을 말함) 다정하니

▶ 피꼬리와 제비가 우는 봄날에 꿈같이 맺어진 인연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옛 전설을 인용해 부각하고 있다.

인간(人間)의 사월 팔일 천상(天上)의 칠석(= 전설에서, 은하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음력 칠월 초이렛날)이로다

▶ '천상의 칠석'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듯, '사월 팔일'은 인간 세상에서 화자가 낭자를 만나 인연을 맺은 날이라는 것이다.

수록 지문 평가

연암 박지원의 언어관, 문장관을 보여 주는 글이다. 주의 깊게 읽어 보자.

천하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다르면서도 서로 비슷한 것이 있다. 언어가 달라도 통역을 통해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한자의 각종 글자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문장을 지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것은 겉모습이고, 같은 것은 내심(內心)이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내심이 비슷한 것은 근본 취지가 비슷한 것이요, 겉보기에 비슷한 것은 껍데기가 비슷할 뿐이라 하겠다.

▶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무엇 때문인가?'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현상을 사례로 들고 있고, 뒷부분은 그 원인을 통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는 겉으로 달라 보이더라도 그 내심이 같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씨 문중의 낙서(洛瑞, 문인 이서구의 자字)는 나이가 십육 세로서, 못난 나를 좇아 공부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의식이 일찍 트이고 지식과 지혜가 구슬 같았다. 일전에 자신이 쓴 『녹천관집』의 원고를 들고 와서 나에게 물었다.

▶ 이 글의 제목인 '녹천관집서(綠天館集序)'는 이서구가 쓴 『녹천관집』의 서문이라는 뜻이다.

“아! 제가 글을 짓기 시작한 지 겨우 몇 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의 노여움을 산 적이 많습니다. 한마디라도 말이 새롭거나 한 글자라도 기이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옛글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화를 내며 ‘어찌 감히 그런 글을 짓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아! 옛글에 있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 하러 다시 씁니까? 원컨대 선생님께서 어찌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 시대에는 ‘용사’라고 하는, 옛글의 내용이나 문장을 인용하는 표현법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것이 옛글이 담은 깊은 뜻과 형식을 살리는 방법이라 여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 새로운 글은 한 글자조차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당대를 지배한 상황이었다. 이서구는 문인이 스스로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녹천관집』은 옛글의 형식을 모방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박지원은 「녹천관집서」를 통해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손을 모아 이마에 얹고 세 번 절한 다음 꿇어앉아 말하였다.

▶ ‘세 번 절’을 한다는 것은 그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이서구는 박지원의 제자로, 박지원보다 훨씬 어렸다. 그런데도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표한 것에서, 이서구의 말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네 말이 매우 올바르니, 가히 끊어진 학문을 일으킬 만하다. 창힐(= 한자를 창제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처음 글자를 만들 때 옛날의 무엇을 모방했겠느냐? 안회(= 공자의 제자로서 구도자의 표상으로 숭상되는 인물)는 학문을 좋아했으나 유독 저서가 없다. 진실로 옛것을 좋아

하는 사람이, 창힐이 글자 만들 때를 생각하면서 안연이 표현하지 못한 취지를 저술한다면 비로소 글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 ‘창힐’은 처음 글자를 만든 사람으로, 박지원은 그가 ‘무엇을 모방했겠느냐’고 묻고 있다. 즉 모방이 진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로, 제자들 중 가장 공자의 뜻을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단명하여 저술을 남기지 못했다.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러니 표현되지 않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처럼 옛글로 표현되지 않은 진리도 있으니 꼭 옛글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함축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이렇게 본다면 ‘진실로 옛것을 좋아하는~글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옛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인 표현으로 진리를 담은 생각을 글로 적는다면 비로소 글이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남의 노여움을 사게 되거든 공손한 태도로 ‘널리 배우지 못하여 미처 옛글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거나, 그래도 계속 따지고 들거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은고(殷誥)와 주아(周雅)(= 각각 유교 경전인 『서경』의 글과 『시경』의 시를 뜻함)는 은나라와 주나라 때 유행했던 시속(時俗)의 글이고, 이사와 왕희지(= 각각 한자 서체인 소전과 행서를 집대성한 인물)의 글씨는 진(秦)나라와 진(晉)나라 때 유행했던 시속의 글씨입니다.’라고 대답하거나.”

▶ ‘은고’와 ‘주아’는 유교의 경전에 담긴 글들로, 본받아야 할 옛글에 속한다. 또 ‘이사’와 ‘왕희지’도 전범이 되는 필체를 집대성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방의 대상이 되는 옛글들이, 그 당시에는 시속의 글과 글씨였다는 것이다. 이는 옛것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앞서 ‘창힐’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따라야 할 전범이 없는 상황에서 전범을 제시한 것이 된다. 곧 모방은 옛것을 따르기 위한 절대적 방법이 아니며, 옛것이 담은 뜻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모방에서 탈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박지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한편 ‘시속’의 것들임을 강조한 데서, 당대 사회에 걸맞은 표현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옛글을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지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에 맞게 표현을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